삼정 KPMG

K SOX Newsletter

September 2022

KPMG 삼정회계법인

K SOX TFT

목차

Section I. Law & Regulation 2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
2. 2021 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2
3.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첫 회의 개최 4

Section II. Articles 4
1. [삼정 KPMG] 2022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5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지정감사인 선임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 발간 5
3. [Protiviti] Volume 18: The Future of Work is Here 발간 5

Section III. Q&A 6
1.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주회사와 계열사 ITGC 평가 및 감사 관련 문의 6
2.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문의 6
3. 내부회계관리 운영계획 보고관련 문의 7

News &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교육행사 소개 9
1. [삼정 KPMG] 제 8 회 Audit Committee Institute (ACI) 세미나 9
2. [감사위원회포럼]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2 년 제 3 회 정기 포럼 10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해설 설명회 10

Section I. Law & Regulation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9일 제10차 임시 회의에서,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❶, 대표자 17인❷, 감사 9인❸, 11개 회계법인❹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5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함

  ❶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 미구축
  ❷ (대표자)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❸ (감사) 운영실태를 미평가 또는 이사회에 미보고
  ❹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

2. 2021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을 분석하여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안내

1. 정정현황

□ 상장회사 2,487사 중 160사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여 전년 대비 35사 증가

□ 2021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410회로 전년 대비 105회(34.3%) 증가

□ 정정 상장회사(160사) 중 감사인이 4대 회계법인인 비중은 15.6%(25사)로, 전년 23.2%(29사) 대비 7.6% 감소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상장회사 수]

(단위: 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유가증권	24	44	51	+ 7(+ 15.9%)
코스닥	77	75	101	+ 26(+ 34.7%)
코넥스	6	6	8	+ 2(+ 33.3%)
상장회사 계	107	125	160	+ 35(+ 28.0%)
비상장회사	947	847	873	+ 26 (+ 3.1%)
합계	1,054	972	1,033	+ 61 (+ 6.3%)

2. 정정내용

□ 전체 정정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78.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감사보고서의 구성]
감사보고서는 1. 감사보고서 본문 2. 재무제표 본문 3. 주석 4. 기타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타)로 구성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 사항 분포]

(단위: 회)

정정 사항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재무재표 본문	257(84.3%)	320(78.0%)	+63
주석*	33(10.8%)	60(14.6%)	+27
감사보고서 본문 등*	15(4.9%)	30(7.4%)	+15
계	305(100%)	410(100%)	+105

* 재무제표 정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재무제표 및 주석 정정이 같이 있는 경우는 모두 재무제표 정정으로 분류

□ 2021년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은 상장회사의 경우 78%로 높은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40.9%로 상장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

✓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에 비해 중요 오류 위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

3. 감사의견 변경 현황

□ 상장회사의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정정 21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 중 상장회사의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정정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19건(15사)으로 전년(27건, 20사) 대비 8건(5사) 감소

□ (감사의견 변경) 감사의견이 한정,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것이 대부분(94.7%)이며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건도 존재(1건 1사, 정정건 중 5.3%)

✓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18건(14사)의 경우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정정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

✓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1건(1사)은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변경

[2021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의견 변경 현황]

(단위: 사)

정정 전 감사의견	정정 후 감사의견			
	적정	한정	의견거절	계
적정	-	1건 (1사)	-	1건 (1사)
한정	5건 (5사)	-	-	5건 (5사)
의견거절	13건 (10사)	-	-	13건 (10사)
합계 (비중)	18건 (14사*) 94.7% (93.3%)	1건 (1사) 5.3% (6.7%)	0건 (0사) 0% (0%)	19건 (15사*)

* 합계 산출 시 중복된 회사는 제외

4. 경과기간

□ 21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과 관련하여 최초 공시 후 정정까지의 경과기간은 평균 18.5개월로 전년(18개월)과는 큰 차이가 없으나, 외부감사 대상회사 전체 평균(9.5개월) 보다는 긴 편

✓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 중요 오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본문 수정이 78.0%로 비상장회사(40.9%)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

5. 시사점

1.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증가 추세
상장회사 정정 횟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며, 2021년 중 정정한 총 410회는 여러 회계연도에서 발생하였으나 주로 2019, 2020회계연도에 집중

• 이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 회계개혁 방안의 안정적 정착에 주로 기인하나, COVID-19 상황이 회사의 재무제표 결산업무 수행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회사는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발견된 회계오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정정할 필요**
2. 감사인의 엄격한 외부감사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 상장회사 증가
최근 지정감사인 등의 엄격한 회계감사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후 재무제표 수정을 통해 감사 의견이 변경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
• 재무제표의 빈번한 정정 및 감사의견 변경은 전임 감사인과의 마찰 및 회사에 재감사 부담 발생 가능 **➡ 감사인은 충실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되, 핵심감사항목 및 중요 회계이슈 등에 대여는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회사가 관련 감사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감사환경을 조성할 필요**
3.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재무제표 등의 빈번한 정정을 통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 및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시 재무제표 감리 등을 통한 엄정조치 예정**

3.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첫 회의 개최

1. 추진배경
•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횡령 등 금융권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별 위법행위자를 제재·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개인 또는 일부의 일탈행위가 금융회사 손실 및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신뢰하락을 초래한 만큼,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임원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2.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방향 및 T/F 운영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 (국정과제 34)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 T/F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와 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 • 해외사례 및 금융권의 실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는 한편,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금융권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 •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의 심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 • 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층 검토·심의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

Section II. Articles

※ 제목 및 이미지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1. [삼정KPMG] 2022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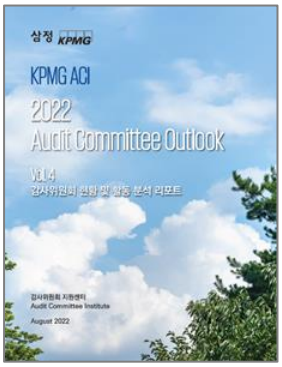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현황을 총망라한 「KPMG ACI Audit Committee Outlook」을 최신 사업연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4번째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 개요]

Ⅰ. 설치: 감사위원회 vs. 감사: 감사위원회 및 감사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간략히 소개하고 KOSPI 200 기업 중 각 감사기구를 설치한 비중을 살펴봄

Ⅱ.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규모, 사외이사 비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현황 등을 다룸

Ⅲ.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지원조직, 교육 및 성과평가 등을 다룸

Ⅳ.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의결권 행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주로 어떤 사유로 반대 의결권이 행사되는 지 논의

Ⅴ. 감사위원회 안건: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가 2021 사업연도에 다룬 감사위원회 안건을 감사위원회 활동영역 별로 분류하여 분석

Ⅵ.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KOSPI 200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각 항목별로 살펴봄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지정감사인 선임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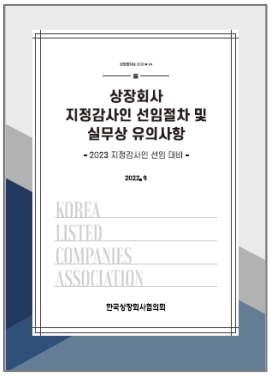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선임 및 계약함에 있어 준수하고 유의하여야 할 절차·방법 등을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전체 체제를 구성한 실무 참고서를 발간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인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 이에 대비하고자 본 실무자료를 발간함

3. [Protiviti] Volume 18: The Future of Work is Here 발간

□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the internal audit profession? Protiviti explores this question at some level in every annual edition of Internal Auditing Around the World

□ In this edition of Internal Auditing Around the World, Protiviti asked internal audit leaders to consider what they and their teams have learned from the pandemic experience so far, and how it might shape the function's future. Protiviti presented them with this question: "As we evaluate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organizations, how will internal audit use it as an opportunity to address the workforce and organization of the future?"

[Table of Contents]

1. Foreword
2. Introduction
3. Ahold Delhaie
4. AstraZeneca
5. Bacarrdi
6. Commerzbank AG
7. ConocoPhillips
8. DKSH
9. Ooredoo
10. SoFi
11. Zimmer Biomet
12. About Protiviti

Section III. Q&A

1.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주회사와 계열사 ITGC 평가 및 감사 관련 문의

Q.
• 지주회사(상장대기업)는 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를 받고 있으며 ITGC In-scope System도 4년째 운영평가 및 감사를 받고 있음 (모두 미비점 없음) • 지주회사인 모기업에서 ITGC In-scope된 System를 직접 운영 및 관리하고 운영평가 및 감사를 받고 있는데, 신규 편입된 계열사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 ITGC In-scope System으로 식별할 경우 해당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해당시스템에 대해 운영평가 및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함 • 지주회사인 모기업 외부감사인의 ITGC In-scope System 감사 결과를 받아서 신규 편입된 계열사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할 경우 해당 계열사는 ITGC 자체 운영평가 및 ITGC 감사 제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함
A.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GSI(Global Single Instance) 방식의 시스템을 지배회사, 종속회사가 구축하여 사용하고 지배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지배회사와 동일한 통제활동이 종속회사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평가 시에 종속회사 관련 사항을 모집단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 즉 GSI 관리조직이 일괄평가 수행 계획과 평가 결과는 종속회사에 공유(Comfort sharing)되고 각 법인은 공유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지배회사 외부감사인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속회사 감사인이 감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는 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임. 회사 입장에서는 지배회사가 수행한 ITGC 평가결과를 종속회사와 공유하면 이를 바탕으로 종속회사 감사인이 필요한 감사절차를 취할 것으로 판단됨

2.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문의

Q.
•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을 등기임원이 아닌 비등기임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함
• 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의 등기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내

부회계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는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

[관련 원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내부회계관리 운영계획 보고 관련 문의

Q.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운영계획 보고도 별도로 진행해야하는지를 문의함

A.

-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운영계획과 관련한 모범규준 등의 문단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화해야 할 대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대상, 범위 및 과정'이 포함

- 매 평가기간 초반에 당기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평가를 수행
- 위험평가에 기반한 핵심통제 선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계획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문서화하고 내부회계관리자 검토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확정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중점 검토항목에 "당기 중요한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가 적절하고 이에 따른 평가 계획이 작성되었는지"를 포함

[관계 원칙]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8. 경영진은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문서화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의 근거를 확보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대상, 범위 및 과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최종 결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의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위험평가 시기

9. 앞에서 제시된 평가 절차 중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려'에서 '유의한 업무프로세스 파악 및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결정'까지는 하향식 접근방법 또는 위험기반의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위험평가" 절차를 주로 구성한다. 이러한 위험평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최초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와 매 평가기간 초반에 이루어진다. 매 평가기간 초반에 당기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하고, 중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중요한 변화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의 위험평가 결과 및 통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는 변화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요한 변화사항은 합병이나 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한 사업단위의 변경, 중요한 신규 거래의 발생,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

88.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 등을 기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의 평가 대상이 되는 핵심통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핵심통제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방식을 결정한다. 설계의 효과성 평가 방식을 결정할 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관리체계의 수립 및 적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중에 발생하는 프로세스, 조직 및 시스템의 변경사항에 따른 변화사항을 파악하고 통제활동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평가하고 변화여부를 확인하는 통제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위험평가에 기반한 핵심통제 선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계획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문서화하고 내부회계관리자 검토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160.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필요에 따라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한다.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반한 평가 계획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중간평가 절차 및 결과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161. 상기 항목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당기 중요한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가 적절하고 이에 따른 평가 계획이 작성되었는지
• 평가자의 독립성과 적격성, 평가 방식(방법, 범위, 시기)이 적정한지
•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별도로 인지한 회계처리 오류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활동의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항목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절차와 결과가 적절한지
•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이 적절한지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가 적절한지

News &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교육행사 소개

1. [삼정KPMG] 제8회 Audit Committee Institute (ACI) 세미나

□ 삼정KPMG ACI(Audit Committee Institute)는 2015년 6월,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로 2022년 9월 22일에 제8회 세미나를 개최함
□ 2023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강조되는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중점으로 다루며 동영상 드라마를 통해 감사 및 감사위원에게 현장의 이슈와 해법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함
○ 주제: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일시: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14:10-17:30
○ 프로그램:

시간	강연내용	강연자
14:10~14:15 [5분]	참석자 안내	김유경 전무(삼정KPMG)
14:15~14:20 [5분]	Opening Remarks	김교태 회장(삼정KPMG)
14:20~14:40 [20분]	**Session Ⅰ - Keynote Speech**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역사와 과제	김유경 전무(삼정KPMG)
14:40~15:25 [45분]	**Session Ⅱ-1 : 동영상 드라마 시청**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 기,起: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운영계획 • 승,承: 자회사 준법 감독	심정훈 상무(삼정KPMG)
15:25~15:45 [20분]	Break Time	
15:45~16:35 [50분]	**Session Ⅱ-2 : 동영상 드라마 시청**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 전,轉: 자회사 자금횡령 사고 • 결,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심정훈 상무(삼정KPMG)
16:35~16:45 [10분]	Break Time	
16:45~17:25 [40분]	**Session Ⅲ : 패널토의 및 Q&A**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 & 김유경 전무(삼정KPMG)

17:25~17:30 [5분]	Closing Remarks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삼정 KPMG)

2. [감사위원회포럼]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2년 제3회 정기 포럼

□ 감사위원회포럼에서 ESG 경영시대에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준비할 사장은 무엇인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감사위원회의 ESG 대응 현황 및 제언'을 주제로 대면 세미나를 개최함

○ 주제: 감사위원회의 ESG 대응 현황 및 제언
○ 일시: 2022년 9월 14일 / 07:30~09:30 (2시간)
○ 장소: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
○ 프로그램:

시간	강연내용	강연자
07:10~07:30 [20분]	참가자 등록	
07:30~08:00 [30분]	조찬	
08:00~08:10 [10분]	환영사	장석일(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08:10~08:45 [35분]	**주제 1**. 감사위원회의 ESG 대응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시사점	백인규(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장)
08:45~08:55 [10분]	Break Time	
08:55~09:30 [35분]	**주제 2.** ESG 경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의 기능과 역할	김우진(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해설 설명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에 대비하기 위한 종속회사 관리실무의 전반적 이해'를 위해 해당 교육을 개최할 예정임

○ 주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대비 종속회사 관리 실무
○ 일시: 2022년 09월 20일 ~ 2023년 10월 31일 (기간내 온라인 자유수강)
○ 장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행사·설명회' → '신청내역 조회' 메뉴)
○ 프로그램:

프로그램 상세내용
1교시(50분) : 대기업(연결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2교시(50분) : 대기업(연결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3교시(50분) :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4교시(50분) :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 참가신청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 → 「행사·설명회」 → 「신청 및 강의자료」에서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해설 설명회'를 선택하여 신청
- 문의: 경제조사팀, (02-2087-7193)